

제안요청서

사업명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8차) 연구
-----	-----------------------

2024. 06.

	기관	부서	직위	성명	TEL	FAX
담당	국토	교통정책총괄과	과장	이재평	044-201-3804	044-201-5579
	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담당	김병진	044-201-3787	044-201-5579

【 목 차 】

I. 연구용역 개요	1
II. 과업의 추진방법	4
III. 과업 수행지침	6
IV. 과업 추진계획(예정 공정표)	12
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3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5
VII. 업체 선정방법	18
VIII. 평가방법 및 기준	18
<제안관련 서식일람>	20

I. 연구용역 개요

1. 과 업 명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8차)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7차 개정)”의 재검토 기한(‘25.8.31까지)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지침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 필요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투자평가 제도 및 방법론에 대한 개정 요구 조사·검토
- 제7차 개정(‘22. 9월) 이후 수행된 도로, 철도, 공항 등 수단별 투자평가 관련 연구성과 내용의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철도지하화*, 지하도로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추진에 따른 표준적 평가방법개발 필요
- *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24.1월)
- 최근 물가 및 건설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산정 원단위 개선 요구에 대한 검토 등
- 최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종합평가(AHP)의 지역균형발전 세부항목 추가 및 위계 조정,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등 신규편익의 지침간 정합성 확보 필요

□ 과업의 목적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7차 개정)” 내용을 재검토하고, 최근 법령 개정, 연구성과 등을 검토하여 지침 개정 방안 마련

- 교통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투자평가지침의 정밀화·전문화 필요
 - 철도지하화 및 지하도로사업 등 정책적으로 새로운 유형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투자평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 및 지침 개선
 - 사업유형별 적정 편익항목 구성, 현실여건을 감안한 비용단가 등 사업타당성 정밀 검토 수준에 부합하는 지침 개정
 - 지침 실효성 및 적용성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 분석기준연도 등의 갱신과 [참고]로 제시된 사항에 대한 반영 가능성 검토
 -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타당성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조사) 등

3. 주요 연구내용

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 연구

- 교통수요예측 분석 원단위 갱신 및 기초자료 보완 개선
 - 수요분석모형 파라미터, 첨두율·비첨두율, 평균재차인원 등
- 비용·편익 항목 원단위 갱신 및 적용기준 정비
 - 표준공사비·통행시간가치·운행비용·환경비용 등 원단위 갱신
- 교통시설투자평가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예측 및 비용·편익 산정 방법 개선 사항 검토
 - 도로, 철도, 공항 등 부문별 연구내용 및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개정 내용 등 검토

- 철도지하화 및 지하도로사업 타당성 평가 방법론 마련
- 지하화 사업의 교통수요예측, 비용·편익 산정 방법론 보완

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연구

- 현행 투자평가제도 현황·문제점 분석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조사)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조사, 각 제도간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 사전타당성조사 법적 근거조항 신설 필요성, 타당성평가 전담조직 신설 등
 -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의 회색영역 포함사업 검토방안 검토
-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비용 및 편익 반영기준 정립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문헌 검토
 - 국내 여건을 고려한 교통사업의 사회적 가치 기준 정립
 - 사회적 비용 및 편익항목 선정, 경제성 분석 반영 절차 및 기준 제시

다. 제8차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안) 작성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8차 개정(안) 제시

4. 예산 : 100,000,000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의 추진방법

□ 기존 연구결과 또는 진행 중인 연구 등 활용 및 검토

- 도로, 철도 등 부문별로 수행한 투자평가지침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정요구안 적정성 및 반영 여부 검토
 - (도로부문) “사회가치의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22년)”, “미래도로 투자평가체계 개선 연구(‘23년)”, “지하도로 및 확장사업 도로투자 평가체계 개선연구(‘23년)” 등
 - (철도부문) “철도부문 편익개선 및 발굴용역(‘23년)”, “철도수요 예측방법 개선 연구용역(‘24년) 등
 - (공항부문) “효율적인 공항시설 투자평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24년)” 등
 - (기타) “지역균형과 탄소중립 시대교통SOC 투자평가체계 개편(KOTI, ‘23년)” 등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개정사항 등 검토 및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23) 및 수행 총괄지침(‘23)
 -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지침 개정 : 항만(‘22년), 공항(‘22년), 도로·철도 편익(‘23년)
 - 최근 공공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등
- 자문단, 전문가 등 개정 의견 검토 후 반영여부 검토

□ 투자평가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 등 투자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운영현황 조사 및 관련 법·제도 검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재정법" 등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동향 분석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연도별 분기별 업무자료 회람, 기재부 간담회 자료 등

□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에 경험이 있는 도로·철도 등 분야별 평가 관련 전문가(발주청, 연구원·교수 등)로 구성
- (역할) 완성도 높은 투자평가지침 수립을 위해 진행상황 점검 및 각 부문별 이견 조정 등 자문의견 제시
- (운영)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완료시까지 수시 개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처와 수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연구진은 발주처와 협의 선정하되, 발주처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연구계획(안)에 따라 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동급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세부사항

- 용역 수행 중 연구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나 과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기관, 연구내용과 범위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도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

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준공 시 전부 납품해야 하고, 성과품을 추가 인쇄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3. 설계변경의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가 변경되거나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는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에 대하여는 “대외주의” 대신 “대외비”로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며,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보안책임자 관리하에 철저히 파기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 중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 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 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제출

-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시기 및 방법
 -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 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과업착수 후 7개월째에 과업의 중간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안)은 과업종료 1개월 전에 보고하고, 최종 보고서는 준공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부수

구 분	규격	면수	부수
착수보고서	10절	50면 내외	10부
중간보고서	10절	100면 내외	10부
최종보고서(안)	10절	200면 내외	10부
최종보고서	10절	200면 내외	30부
최종보고서CD			2부

6. 기타사항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10일전까지는 집행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조정 하되 조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IV. 과업 추진계획(예정 공정표)

□ 과업기간 : 12개월

구 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연구												
2. 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개선 연구												
3. 제8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작성												
보고 및 회의	착수 보고		자문 회의		자문 회의		중간 보고		자문 회의		지침 개정 (안)	최종 보고
공정률(%)	10	15	25	30	40	45	55	60	70	75	90	100

* 1차 과업기간 4개월('24년), 2차 과업기간 8개월('25년)

V.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1.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단,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결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VI.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20매 이내로 한글(포인트 13,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A3는 A4용지 2매로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접수처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0)

라. 제출서류

- 입찰관련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VII. 업체 선정방법

1. 선정절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제외

- **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평가점수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V. 평가방법 및 기준

1. 기술평가(기술능력 평가, 8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20)	수행실적 연구인력	- 연구진 중 동일 또는 유사용역 유경험자 수 (교통관련 제도 개선 관련)	20	계량평가
과업수행 부 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30	"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
	연구조직 구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제시	5	"
계			100	

나.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수행실적 연구인력(20점) : 동일 또는 유사용역 유경험자 수

구 분	해당분야 용역 유경험자 수		
	5인 이상	3~4인	2인 이하
점 수	20	16	12

※ 동일 또는 유사용역 유경험자는 최근 5년(2019.6월 ~ 2024.6월)간 교통관련 연구 용역 수행자(용역 최종보고서 기준)

다.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미흡	미흡
과업수행 부 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수행계획	20	20	16	12	8	4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 타	5	5	4	3	2	1

※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정: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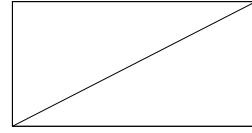
2.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제안관련 서식일람>

1. 과업제안서(표지)
2. 서약서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5. 연구진 이력사항
6. 보안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



과업제안서

용역명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8차) 연구

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개년)	구분	00년	00년
	자본금		
	매출액		
9. 상시 종업원수			
10. 징계사항			

<서식 3>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참여 부분
책 임 연구원		00.00.00				
공 동 연구원						
연 구 보조원						

-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3. 박사 학위 소지자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4>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학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논문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주) 1. 최근 5년(2019.6월~2024.6월)간 교통관련 제도 개선 관련 용역(연구)수행 경력만 기재할 것.
2. 실적증명서(최종보고서 표지 및 연구진 구성 관련 면 사본) 첨부

<서식 5>

[별지 제16호 서식]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4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8차)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과업 제안서 작성 순서

1. 과업제안서 (<서식 1> 활용, 내용포함)
2. 제안서 내용 (A4용지로, “아래한글” 활용요망)
3.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서식 2> 활용)
5.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및 이력사항 (<서식 3> 및 <서식 4> 활용)
6. 보안서약서 및 청렴계약서(<서식 5> 및 <서식 6> 활용)
7. 첨부자료
 -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